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예방 조치 포함 등 >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79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68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2211379)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2211568) ····· 3

Ⅰ. 제안경위 ·····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Ⅲ. 검토의견 ····· 4

1. 공항개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 포함 (인요한의원안 제4조제3항, 박지혜의원안 제4조제3항 등) ····· 4

2.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포획 근거 신설(인요한의원안 제26조의2 신설) ····· 15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2211379)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인요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2211568)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8.
3. 회 부 일 : 2025. 7. 2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항개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 포함(인요한의원안 및 박지혜의원안 제4조제3항 등)

개정안들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박지혜의원안 제3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충돌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인요한의원안 및 박지혜의원안 제4조제3항).

현 행	인요한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공항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u>

현 행	인요한의원안	박지혜의원안
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④ ~ ⑦ (생 략)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에 관한 평가 및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8.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보고서[1)]에 따르면, 활주로 접근 시 항공기가 조류무리를 확인하고 복행 중 조류와 근접하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되었으며, 엔진조사 중 해당 항공기의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 종으로 추정되는 조류의 깃털이 발견되어 조류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한편, 최근 5년간 공항별 조류 충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운항편수가 적었던 최근 5년간에도 조류 충돌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매년 200여건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류 충돌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항별 조류 충돌 현황 】

(단위 : 건)

공항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인천	25	19	35	57	102	238
김포	40	59	57	52	43	251
김해	18	43	47	51	53	212
제주	38	52	33	54	49	226
대구	6	11	9	9	11	46
울산	6	6	4	2	1	19
포항경주	0	3	2	0	0	5
광주	13	7	8	8	7	43
여수	5	3	4	3	2	17
사천	0	1	0	3	3	7
청주	1	10	13	14	11	49
원주	0	0	0	0	0	0
군산	0	1	2	2	2	7
무안	1	0	1	2	6	10
양양	1	4	1	0	0	6
계	154	219	216	257	290	1,136

자료 : 국토교통부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주공항 여객기사고(2024.12.29.) 예비보고서」, 2025.1.27.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37호, 2025.8.26. 일부개정)은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및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제31조의10)'를 신설하여 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 조류충돌 관련 「공항시설법」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조문	주요 내용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조사,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검토의견

개정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공항 건설 이후에는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제31조의10)'를 통해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공항 건설 이전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항입지의 타당성 검토 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 공항개발사업 시행 절차 】

추 진 절 차	주 요 내 용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5년 단위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용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후 고시
↓	
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기획재정부 시행)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시행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고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공항시설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5조(협의 대상)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사업면적 3만㎡이상인 사업(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 공항시설법 제4조 및 항공사업법 제4조(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총사업비 협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	
기 본 설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71조(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실 시 설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73조(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로 실지 공사비 산출자료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 공항시설법 제2조9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500m이상 활주로건설, 사업면적 20만㎡이상인 사업,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 협의**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5조(협의 대상)) *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개발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의 설치(연 30만명 이상의 여객처리),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심의
교통안전 진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의 신설(연 10만명이상의 여객처리), 사업실시계획 승인전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
↓	
실시계획 승인·고시	-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제8조(인·허가 의제 등)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20일 이내) 등 협의를 거쳐 승인·고시
↓	
공사착공 및 준공(개항)	-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준공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설정 준공설계서, 유지관리업무인수인계

※ 자료 : 국토교통부

최근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조류의 서식 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신공항 계획에 대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충돌 가능성(종별 개체군 크기, 번식지 위치, 공간이용정도, 비행행동 등) 및 충돌위험도(피해확률=피해사고/충돌건수)를 고려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방법, 유사공항과의 정량적 비교를 통한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11.1.1-179> '17~'22년 현지조사 종합결과로 평가한 충돌 위험도 평가매트릭스

구분		Probability of strikes(충돌 가능성)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Probability of damage (충돌 심각성(피해정도))	매우낮음	개똥지빠귀 1종	쇠오리, 되새, 딱새, 흰배멧새, 넓적부리, 홍머리오리, 쇠물닭, 흰배지빠귀, 호랑지빠귀, 촉새 등 총 10종	까마귀, 왕눈물떼새, 갈매기류, 종다리, 말똥가리, 한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장다리물떼새, 참새, 물닭, 귀제비 등 총 12종	황로, 애가리, 멧비둘기, 까치 등 총 4종	제비 1종
	낮음			매, 황조롱이 등 총 2종		
	보통			꿩, 백로류 등 총 2종		
	높음		오리류, 청둥오리류 등 총 2종			
	매우높음			꼬마물떼새, 알락할미새, 물수리, 팍도요 등 총 4종	흰뺨검둥오리 1종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11.1.1.1 – 155> 계획지구 충돌 위험성 매트릭스평가 결과(159종)

구분		Probability of strikes(충돌 발생 가능성)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Probability of damage (충돌 심각성 (피해정도))	매우낮음		두견이,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검은등뻐꾸기, 까마귀 꼬까참새, 솔개, 수리류, 원앙, 학도요 등 총 30종	개개비, 개똥지빠귀, 검은댕기해오라기, 검은머리갈매기, 고방오리, 까치, 논병아리, 딱새, 물닭 등 총 100종	개꿩, 검은머리물떼새, 민물가마우지, 민물도요, 쇠기러기, 큰기러기, 혹부리오리
	낮음				매, 황조롱이	
	보통				꿩	백로류
	높음					청둥오리
	매우높음			개리	기러기류, 팍도요, 독수리, 물수리	흰뺨검둥오리

※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흑산공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충돌 방지팀 운영, 레이저·음파시스템·드론 등 조류충돌방지 장비 활용, 대체서식지 조성 등 구체적인 조류충돌 방지 및 회피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인요한의원안과 박지혜의원안은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공항)개발 과정에서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에 관한 평가 및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들을 공항의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류 서식지 분석, 유인요인 제거 등 **조류충돌로 인한 중대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공항 건설 시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공항 운영 시 조류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4호] 】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⑤ 공항 건설 시에는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공항 운영 시 **조류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박지혜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단계 이전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도 "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공항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수요의 전망,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핵심과제'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3]의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공항 입지별로 파악이 필요한 야생생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야생생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및 공항주변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3)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핵심과제, 3. 장래 항공수요 예측, 4. 전국 공항 분포, 5. 공항별 개발 방향, 6.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방안은 각 개별 공항의 사업부지가 확정된 이후 해당 부지에서의 야생동물 분포 및 조류이동현황 등에 기반하여 조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본계획 수립·고시 단계부터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1) 인요한의원안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현재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바람의 영향, 조류충돌 위험성 등 항공기 안전 운항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조류충돌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임.

2) 박지혜의원안

① **(종합계획 관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공항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공항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고려할 때 개별 공항개발에 따른 환경영향분석은 공항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위험성 평가 관련)**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공항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거침으로써 사업시행자 자체 평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포획 근거 신설(인요한의원안 제26조의2 신설)

인요한의원안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인요한의원안
<신 설>	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포획활동)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의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은 금지되어 있음.[4)]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만, 공항 인근 출현 조류 중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조류충돌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공항시설법」에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률 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에 관한 사항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공항 인근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안)이 발의되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안 심사

---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은 조류유인 제거 및 퇴치 행위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질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에도 포획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통일적인 절차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정부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조류충돌 예방강화를 위해 공항에서의 야생생물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포획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항 내에서 포획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포획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환경부 의견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 서식지 관리 및 유인 제거 등이 우선되며 야생동물의 포획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용곤란**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